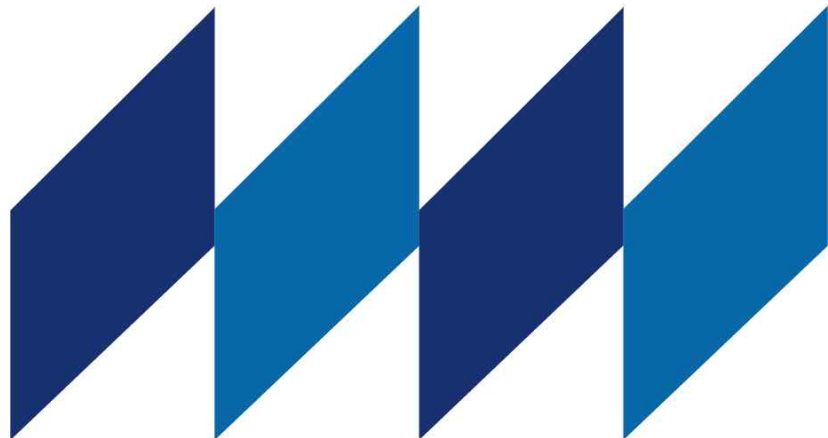


임직원 행동기준



임직원 행동기준

이 임직원 행동기준(이하 “행동기준”)은 JB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모든 임직원(계약직, 파견 근무자 포함)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동기준

제1장 기본 자세

- 법규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내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임직원 간 이를 위반하는 업무처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 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 수행 시 직무에 충실하며, 임직원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 공정한 자유경쟁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정당하게 경쟁하며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2장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 상호 존중 및 차별금지

임직원은 상하 및 동료 간 상호존중과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며 성별·연령·학연·지연·혈연·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내부제보 및 제보자 보호

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 또는 감사담당 부서에 제보 및 공시 익명 시스템(JB 두드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 JB 두드림이란? JB금융그룹의 내부자신고제도의 명칭으로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을 제보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JB금융그룹을 만들기 위한 제도)

제3장 뇌물 및 부패방지

-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부당한 청탁금지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등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청탁 등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뇌물 수수 금지

임직원은 뇌물 및 관행적 불법 수수료 등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 부당한 정치활동 관여 금지

임직원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후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의 제공 및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공정한 업무수행

- 정보보호

- 고객 정보보호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의 정보(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가 제공·이용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 정보보호

회사의 물적·지적 재산과 정보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한다.

- 지적재산권 보호

타인의 지적재산을 존중하고 무단사용, 복제, 배포 등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 차익 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는다.

- 금융실명거래 준수

- 임직원은 금융거래 시에는 금융실명법령에 따른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등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한다.

- 자금세탁행위 관여금지
 - 임직원은 중대범죄 행위로 발생한 불법재산을 은닉·가장하려는 자금세탁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5장 지역사회 공헌과 환경보호

- 지역사회 공헌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정당한 이익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 하고 학문과 예술, 문화,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재해예방 및 환경보호

임직원은 재해·위험의 예방관리 및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재해 안전 및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JB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모든 임직원(계약직, 파견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되며, 또한 협력 회사(계약자/공급자/서비스 제공자 포함)에 대해서도 본 “행동기준”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이 “행동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강령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행동기준의 보완적 판단 원칙

임직원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임직원 스스로 판단에 확신이 어려운 사항은 준법 담당부서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임직원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내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임직원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을 다른 임직원이나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
- 다른 임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이나 행동을 할 것인가?

임직원이 본 ‘행동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중을 판단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